



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7. 1. 5.] [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, 2017. 1. 5., 타법개정]

서울특별시(자활지원과), 02-2133-748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노숙인 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가.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나.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다.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
2. "노숙인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- 가. 종합지원센터 : 노숙인 등에게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시설
 - 나. 일시보호시설 :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
 - 다. 자활시설 :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·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 - 라. 재활시설 :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 - 마. 요양시설 :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 - 바. 급식시설 : 노숙인 등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 - 사. 진료시설 : 노숙인 등에게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시설
 - 아. 쪽방상담소 : 쪽방지역주민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시설
3. "노숙인시설 종사자"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, 상담,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,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, 보호와 재활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1.5>

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.

- 1.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
- 2.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·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
- 3. 노숙인 등의 보호·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
- 4. 노숙인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
- 5. 노숙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노숙인 일자리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
- 7. 노숙인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
- 8. 여성·장애·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
- 9.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
- 10. 노숙인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
- 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<개정 2017.1.5>
 1. 노숙인 등의 수, 거주지, 거주 형태, 성별 및 나이 등 현황
 2.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
 3. 노숙인 등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
 4. 노숙인 등이 민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7.1.5>

- 1. 노숙인 분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
- 2.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- 3. 노숙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노숙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, 노숙인 관련 기관, 단체, 시설관계 인사, 그 밖에 노숙인 관련 학계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7.1.5>
-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7.1.5>

제8조(지원대상 사업)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
2.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
3.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·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
4. 노숙인 등의 자활·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및 고용지원 사업
5.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6. 노숙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
7. 여성·장애·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 보호에 관한 사업
8.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
9.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
10.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에 필요한 지원 사업

제9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·자립과 사회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비용의 지원)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교육)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인권의 보장) 시장은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(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) <제6386호,2017.1.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